

# 기안용지

불류기호 문서번호	도계415-	(별지번호 75-6593)	경찰국장
처리기간	640	시장	<i>2022. 4. 22.</i>
시행일자	77. 4.	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제2부시장 전승 도시정책국장 김기현 도시계획과장 김기현	협 의 부 서 무	법무 담당관 이현우 심사관
기안책임자	정광훈 77. 4. 정성원	조	
경수신조	각안참조	발 신	총 계



제 목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제 77-12호  
 <제1안> 내부결재

1. 지하철 본부장으로부터 지하철 차량기지 확보에 따라  
 인근 주민의 15m 도로가 차단 되므로 민원이 야기되어 지하철  
 배선 계획 일부조정하여 민원 해결코자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 
 제12호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(77. 3. 16)의 권한  
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시행코자 합니다.

<제2안> 고시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77-12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 
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 
 부고시 제41호(77. 3. 16)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 
 고시 한다.

2. 관계 도서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

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투자 수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

보임. 고시안심사 1973. 4. 25. 제 133 호

심사자 법제국장 법무관

1977. 4.

30

2125 25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로경정 및 지적승인 조치

구분	등급	류별 번호	목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신설	소로	3	6 <sup>m</sup>	195 <sup>m</sup>	용답동37	용답동28-1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제3안.

수신: 건설부장관

발신: 시장

제목: 동 건.

1. 당시 판내 도시계획시설 (도로)을 별첨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관계 도서 첨부 보고합니다.

첨부: 고시문서본 및 관계 도면 1부.

제4안.

수신: 문화정보실장

발신: 시장

제목: 시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시보에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: 고시

나. 게재내용: 별첨 고시문서본.

다. 고시구역: 도시계획법 제 13조.

첨부: 고시문서본 1매.

제5안.

수신: 성동구청장

제목: 종 건

1. 구구 관내 도시계획사항이 별첨 고시문서본과 같이 결정 되었기 통보하니 관계 조례 정의하여 도시 계획 염두에

착오 없도록 하기 바람.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매.

제 6 안

수신: 지하철 본부장

제목: 동 건

1. 지증 415-327 (77. 2. 9) 의 완전입니다

2. 위래호로 요청하신 지하철 차량기지에 대하여

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 되었기 충분하니 착오 하기 바람

니다.

첨부: 고시문사본 및 도면각1매

첨부 : 고시문 차본 및 관계도면 각 1 부 : 꼴.